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 ·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51
------	------

제출일자 : 2021. 2. 8.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확대(안 제3조)
- 나.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된 용어를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규정(안 제9조, 안 제11조)
-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협의기관: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도첨부
- 2) 입법예고(2020. 12. 29. ~ 2021. 1. 18.) : 별도의견 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첨부
- 4) 규제사전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과)
- 5)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 6)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미반영(세부내역 별첨)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 ·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 ·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 · 관리 조례” 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재난 관리 기금” 을 “재난관리기금” 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 관리 기금” 을 “재난관리기금” 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7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예방 · 대응 · 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 · 연구 사업
2. 재난 예방 · 대응을 위한 교육 · 훈련 및 홍보
3. 재난취약 지역 · 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이나 자문 결과 안전조치에 필요한 장비 구입 비용, 점검이나 자문을 제공한 전문가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5.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6. 법 제3조제6호와 관련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 능력 확충사업 (이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7. 법 제40조부터 제42조에 따라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나 대피명령을 이행하는 사람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8.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9.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 ② 영 제74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자연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위치한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
 2. 「산림보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에 위치한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
 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에 위치한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
 4. 그 밖에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
 5. 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붕괴 등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
- ③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기금의 용도 외에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의 제목 “(기금의 운용관리)” 를 “(기금의 운용·관리)”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을 “구청장” 으로 하며,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예치·관리한다” 를 “예치·관리한다” 로 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구청장은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 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 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기금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설치 및 구성)” 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금의” 를 “구청장은 기금의” 로, “운영 관리를” 을 “운용·관리를” 로, “재난 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을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 이라 한다)”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난 관리기금 업무 담당국장” 을 “기금 업무 담당 국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은 당연직” 을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은 당연직” 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중 “운용·관리” 를 각각 “운용·관리” 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대표하며 회의” 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직무를 대행한다” 를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로 한다.

제8조의2 중 “재난 관리 기금 업무 담당팀장” 을 “기금업무 담당 팀장” 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을 “구청장은 제1항” 으로, “기금운용계획서는 세입 · 세출예산안과 함께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를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세입 · 세출예산안과 함께” 로, “제출하여야” 를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로 한다.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용 · 관리” 를 “운용 · 관리” 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팀장

제11조제1항 중 “기금결산보고서” 를 “기금결산보고서”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3항) 중 “세입 · 세출결산서” 를 “세입 · 세출결산서” 로, “제출하여야” 를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수입 · 지출절차 및 출납 · 보관” 을 “수입 · 지출절차 및 출납 · 보관” 으로, “관리 · 처분” 을 “관리 · 처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 · 관리 조례</u>	<u>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u>재난 관리 기금</u> 의 효율적인 운용 ·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재난관리기금</u> ----- ----- -----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금천구 <u>재난 관리 기금</u> (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제2조(기금의 조성) ----- ---- <u>재난관리기금</u> ----- -----

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2. (생략)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 활동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 사업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특정관리대상시설)제2항에 따른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사업

다.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라.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

마.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 사업 및 재난대응대비 훈련

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단, 유지관리

-----.

1. 2. (현행과 같음)

제3조(기금의 용도)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예방·대응·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사업

2. 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3. 재난취약 지역·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이나 자문 결과 안전조치에 필요한 장비 구입 비용, 점검이나 자문을 제공한 전문가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5.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6. 법 제3조제6호와 관련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

제외)

사. 하천시설, 빗물펌프장, 배수관, 우수지의 수문관측 시설 등의 설치·정비·보수사업

아.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 구입, 수당 및 경비

자. 기금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 경비

2. 재난 예보·경보시설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 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 전광판, 자동경보시설 등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3.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제설 또는 수방용 자재 및 삽날구입(단, 제설차량 구입, 습염식 제설시스템 설

구조 능력 확충사업(이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7. 법 제40조부터 제42조에 따라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나 대피명령을 이행하는 사람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8.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9.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② 영 제74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자연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위치한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

2. 「산림보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에 위치한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

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봉

치,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제외) 및 임차

라. 법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

4.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 사업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 장비의 구입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5.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 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6.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피위험지역에 위치한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

4. 그 밖에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

5. 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 점검 결과 붕괴 등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

③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기금의 용도 외에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활동

8.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한다.

③ (생략)

④ 구청장은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정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을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총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 기금액“이라한다)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구청장-----

--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

예치·관리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기금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관리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기금 운용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 관리기금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주택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전도시과장, 도로과장, 치수과장이 된다.

⑤ (생략)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략)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

⑤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기금의 --- 운용·관리를-----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

② -----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 -----.

③ -----
----- 기금업무 담당 국장 -----.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
----- 운용·관리-----
-----.

1. ~ 4. (현행과 같음)
5. ----- 운용·관리-----

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의2(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관리 기금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계획
4. (생략)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
-----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

② -----

-----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의2(간사) -----

----- 기금업무 담당 팀장-----.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삭 제>
3.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
용계획서는 세입 · 세출예산안
과 함께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 ·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
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기금업
무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기금업
무 담당주사

② (생략)

제11조(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
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
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

③ 구청장은 제1항--- 기금운
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세입
· 세출예산안과 함께 -----

----- 제출
하여 의결을 받아야 ----.

제10조(회계공무원) ① -----
----- 운용 · 관리-----

-----.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팀장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기금의 결산) ① -----
----- 기금
결산보고서-----.

<삭 제>

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세입 · 세출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 · 지출절차 및 출납 ·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
----- 세입 · 세출결산서-----
----- 제출하여 의결
을 받아야 ----.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

수입 · 지출절차 및 출납 · 보관
----- 관리
· 처분 -----
-----.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삭 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 ·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조례안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사람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비용 및 주택임차에 관한 용자 지급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사항으로 재난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임차 관련 용자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상이하므로 그에 따른 소요 비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안전도시과 정 아 람
연 락 처	2627 - 2932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 ·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2.29>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2항에 따른 적립액 <개정 2011.12.29>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 활동
 -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 사업
 -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2조(특정관리대상 시설)제2항에 따른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 진단 및 보수·보강 사업
 - 다.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라.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
 - 마.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 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
 - 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단, 유지관리 제외)
 - 사. 하천시설, 빗물펌프장, 배수관, 우수지의 수문관측시설 등의 설치·정비·보수사업
 - 아.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 구입, 수당 및 경비
 - 자. 기금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 경비
2. 재난 예보·경보시설
 -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자동경보시설 등
 -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3.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 다. 제설 또는 수방용 자재 및 삼날구입(단, 제설차량 구입, 습염식 제설시스템 설치,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제외) 및 임차
 - 라. 법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
4.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 사업
 -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5.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6.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개정 2011.12.29, 2018.2.27>
7.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신설 2012.12.31>
8.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8.2.27.>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한다.

③ 구청장은 영 제74조제8호(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에 따른 기금의 용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9, 2018.2.27>

④ 구청장은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정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을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총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 기금액“이라한다)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 (이하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 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⑤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금용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02.28, 2011.12.2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29, 2019.5.9.>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 관리기금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07.02.28, 2011.12.29>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주택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안전도시과장, 도로과장, 치수과장이 된다.<개정 2005.05.24, 2006.12.29, 2007.02.28, 2007.12.28, 2011.03.18, 2011.08.12, 2013.10.31, 2014.11.14., 2015.5.18., 2018.2.27, 2019.5.9., 2019.12.31.>

⑤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6명 이내로 한다.<개정 2005.05.24, 2007.02.28, 2011.12.29., 2019.5.9.>

제5조의2(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5.9.]

제5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자문·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5.9.]

제5조의4(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제5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본조신설 2019.5.9.]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개정 2007.02.28>
 2. 기금운용 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07.02.28>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12.29>
- ② 삭제 <2019.5.9.>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1.12.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하반기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9.5.9.>

제8조의2(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관리 기금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19.5.9.]

제8조의3(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5.9.]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계획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는 세입 · 세출예산안과 함께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5.9.]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 ·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국장 <개정 2007.02.28>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주사 <개정 2005.05.24, 2007.02.2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세입 · 세출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 · 지출절차 및 출납 ·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 계 법 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이하 "최저적립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③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21을 말한다.

④ 제74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그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